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364
----------	-----

2024. 1. 25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16. / 김동훈 의원 등 9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누전, 감전사고, 정전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민관 협의체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, 제2조)
-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. (안 제4조)
-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. (안 제6조, 제7조)
- 공중케이블 정비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,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
-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 되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